

문서제출명령 신청에 대한 의견서

사 건 2025나386 손해배상(자)
원고, 항 소 인 최애숙 외 2인
피고, 피항소인 케이지모빌리티 주식회사

위 사건에 관하여 피고(피항소인, 이하 ‘피고’라고만 합니다) 소송대리인은 원고들의 2026. 4. 29. 자 문서제출명령 신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의견을 개진합니다.

다 음

1. 원고들이 문서제출명령 신청을 한 문서

원고들은 2026. 4. 29. 자로 ‘피고가 컨티넨탈(Continental)사로부터 교부받아 보유하고 있는 이 사건 자동차에 장착된 ECU에 대한 ECU 사양서(이하 ‘이 사건 문서’라고 합니다)’에 대한 제출을 신청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귀 재판부께서는 2026. 4. 30. 피고에게 의견제출요청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위 문서제출명령신청에 따른 의견 제출을 요청하셨고, 피고는 2026. 5. 8. 위 의견제출요청서를 송달받았습니다.

2. 문서제출명령 신청에 대한 피고의 의견

가. 관련 법리

민사소송법 제344조 제1항 제3호 다목은 (i) 민사소송법 제315조 제1항 각호에 규정된 사항 중 어느 하나에 규정된 사항이 적혀 있고, (ii) 비밀을 지킬 의무가 면제되지 아니한 문서는 문서제출명령의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위 예외규정이 인용하는 민사소송법 제315조 제1항은 제2호를 통해 ‘기술 또는 직업의 비밀에 속하는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기술 또는 직업의 비밀’은 그 사항이 공개되면 해당 (기술 또는) 직업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그 이후 이에 대한 수행이 어려운 경우를 가리키고, 문서제출을 거부할 수 있는 보호가치 있는 비밀이란 정보의 내용과 성격, 정보가 공개됨으로써 문서 소지자에게 미치는 불이익의 내용과 정도, 민사사건의 내용과 성격, 민사사건의 증거로 문서를 필요로 하는 정도 또는 대체할 수 있는 증거의 존부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보호가치 있는 것을 뜻합니다(대법원 2015. 12. 21. 선고 2015마4174 결정 등).

여기에서, 당사자가 그 비밀이 공개되면 해당 직업의 수행에 심각한 영향을 주어 그 이후 직업의 수행이 현저히 곤란하게 되는 사정이 있어 진실발견의 요청을 희생하여서라도 보호할 만한 가치가 있음을 소명하면, 해당 문서가 직업의 비밀에 관한 사항이 적혀 있는 문서로 문서제출의무가 면제되는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하게 된다고 보아야 합니다.

나. 이 사건 문서는 피고뿐만 아니라 컨티넨탈사의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문서여서 비밀로 보호될 필요가 크고, 소송과 관련이 없는 부분까지 포함한 ECU 사양서 전체를 살펴볼 필요가 없으며, 이익형량상으로도 문서제출의무가 없습니다.

(1) 이 사건 문서는 컨티넨탈사가 피고와 협의하여 ECU를 제작한 후 교부한 사양서입니다. 따라서 해당 문서에는 피고의 영업비밀이 기재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 제3자인 컨티넨탈사의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정보가 기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컨티넨탈사로부터 ECU 및 그 사양서를 제공받은 피고로서는 당연히 그 내

용을 제3자에게 공개하지 않을 의무를 컨티넨탈사에 대하여 부담합니다.

특허권 침해소송 등에서는 법원이 제출된 영업비밀에 대한 비밀유지명령을 할 수 있고, 그 비밀유지명령을 위반한 자는 형사처벌도 가능합니다(특허법 제132조 제1항, 제3항, 제224조의3, 제229조의 2). 그러나 이 사건과 같은 제조물책임 소송에 대하여는 이와 같은 규정이 없으므로, 이 소송절차에서 영업비밀인 문서들이 제출될 경우 소송상대방이 해당 문서들을 이용하는 것을 제한할 방법이 없습니다.

실제로, 원고들 소송대리인은 이 사건과 유사한 자동차 제조물책임 소송을 여러 건 수행하면서, 빈번하게 다른 사건을 통해 입수한 정보를 광범위하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 사건에서도 타 사건에서 진행된 국과수 직원 김종혁의 증언녹취서(갑 제100호증), EDR 기록, 동영상(갑 제44호증 내지 47호증)를 제출한바 있고, 다른 자동차 제조업체 K사의 제조물책임이 문제된 사건(서울중앙지방법원 2021가단5340303)에서도 이 사건 원심에서 진행된 증인 박정철에 대한 증인 녹취서 및 피고가 이 사건에 제출한 피고의 BCM 사양서를 서증으로 제출한바 있습니다. 이처럼 원고들 소송대리인이 이 사건 문서를 입수하는 경우, 이를 다른 사건에서 폭넓게 활용하여, 그 다른 사건의 당사자가 이 사건 문서를 입수하는 등, 기밀문서로 보호되고 있던 이 사건 문서가 외부로 공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2) ECU 제작은 고도의 기술이 필요한 작업으로서, 이에 대한 영업기밀이 외부에 공개되는 경우 컨티넨탈사의 영업비밀 침해로 인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 문서가 외부에 공개될 경우, 컨티넨탈사는 단순히 특정 문서 1건이 공개되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ECU 개발 과정에서 축적한 핵심 기술정보와 경쟁상 우위의 원천을 상실할 위험이 있습니다. 경쟁사나 관련 업계 종사자가 위 문서를 입수할 경우, 컨티넨탈사의 제어 알고리즘, 하드웨어·소프트웨어 구성 방식, 부품 간 인터페이스, 검증 기준 및 설계상 선택사항 등을 역설계하거나 분석하여 향후 제품 개발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는 컨티넨탈사가 막대한 비용과 시간을 투입하여 축

적한 기술적 성과가 무단으로 이용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고, 그로 인한 경쟁상 손실은 사후적인 금전배상만으로 회복되기 어렵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피고는 이 사건과 관련이 있는 부분만 발채를 하여 을 제42호증으로 제출하였던 것입니다. 반대로 이 사건과 관련이 없는 부분까지 포함하고 있고, 영업비밀에 해당하며, 심지어 제3자의 영업비밀이 포함된 이 사건 문서 전체를 피고로서는 제출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3) 한편, 원고들은 피고가 이 사건 문서의 일부를 제출하였음을 기화로 이 사건 문서가 인용문서에 해당한다며 이 사건 문서에 대한 제출명령을 신청한 것으로 보입니다(원고들의 2026. 4. 29.자 문서제출명령신청서의 ‘문서의 취지’ 및 ‘문서제출의 무의 원인’ 부분).

그런데 피고는 어디까지나 원고들의 주장을 반박하고 귀 재판부의 이해를 돕고자 을 제42호증을 제출한 것이므로, 을 제42호증에 대한 제출을 철회하고자 합니다.

(4) 요컨대, 이 사건 문서 전체가 이 사건 소송과 관련이 있는 것이 아니므로 그 전체를 공개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소송상의 이익은 미미한 반면, 이 사건 문서 전체가 제출되어 공개됨으로써 입는 컨티넨탈사의 피해는 중대하고, 쉽게 회복이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익형량에 따르더라도, 이 사건 문서를 ‘제출의무 있는 문서’로 볼 수 없습니다.

원고들이 이 사건과 관련이 있는 부분만을 발채하여 제출하라는 취지로 신청취지를 감축하거나 별도의 문서제출명령을 신청할 가능성도 있겠으나,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피고가 을 제42호증으로 제출하였다가 철회한 문서 외에는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부분이 있지도 않은바, 더 이상 제출할 수 있는 부분이 존재하지도 않습니다.

3. 결론

이상의 이유로, 원고가 제출을 구하는 이 사건 문서는 피고 및 제3자인 컨티넨탈의 영업비밀이자 직업상 비밀에 해당하여 민사소송법 제344조에 따라 제출을 거부할 정당한 이유가 있습니다. 따라서 원고들의 위 문서제출명령 신청을 기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귀 재판부께서 원고들이 ECU 사양서 전체에 대한 확인을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 되신다면, 피고로서는 컨티넨탈사와의 관계에서 비밀유지의무가 있어 컨티넨탈사의 영업비밀이 적힌 문서 전체를 직접 제출하는 것이 어려운 상황이므로, ECU 사양서를 직접 작성한 ‘컨티넨탈사’를 상대로 원고들이 사실조회신청 등을 하는 것으로 소송 지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 5. .

피고(피항소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 율촌

담당변호사 염 용 표

담당변호사 김 익 현

담당변호사 유 병 수

담당변호사 권 효 진

서울고등법원(춘천) 제2민사부 귀중

열람용